제 1 절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

1. 개 관

1960년대 초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이주 정책은 주로 과밀인구 해소를 위한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해외이주의 개념이 이민 송출국과 수민국간의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이해됨에 따라 우리의 해외이주도 호혜적 국제협력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다. 외국환 관리법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직접 투자와 간접투자 범위 및 대상을 크게 완화하여 누구나 해외투자가 가능하여 졌으므로 해외투자 이민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한 느낌이 있으나, 아직도 투자 및 사업 이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우리 경제의 대외적 확대를 의미하며, 수민국에 있어서는 우리 자본을 통한 수민국가에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해외이주자 수는 1962년 해외이주법이 제정된 이후 40여년 동안 약 9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의 총수는 약 630만명에 이르고 있다.

재외동포는 개개인이 해외로 이주한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으나,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인내, 근면, 성실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으며 세계 도처에서 우리민족 문화 전파 및 확산과 우리나

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2. 해외이주정책

정부는 해외이주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 국민들이 해외이주에 대해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을 갖도록 안내해 왔으며, 해외이주 촉진을 위한 수민국의 이민 문호 확대를 위해 교섭을 하는 한편 재외공관 등 국가 기관의 해외조직망을 활용, 효율적인 이주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이주 희망자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질서 있는 이민 송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1988년 11월 국제이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IOM)에 가입하였으며, 1962년 제정된 해외이주법을 변화된 대내외 현실여건에 맞도록 1991년 개정하였고, 국내의 민주화 요구 수용 및 범정부적 규제개혁 철폐를 통한 해외이주 활성화를 위해 1999년 해외이주알선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어 2003년 12월 현재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해외이주 알선업체는 85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 희망자가 알선업체로의 접근이 용이해진 점도 있으나 영세 이주알선 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 및 부실한 서비스 등으로 해외이주 희망자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

3. 해외이주 현황

미국 등 일부 수민국들은 9.11 테러사건 이후 보호주의적 수민정책

을 취하고 수민 문호를 상당히 제한하거나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고 등의 고전적 의미의 이민은 줄어들고 있으나 취업(비숙련공 등) 이주, 사업이민, 투자이민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 속에서 해외이주자 수는 1980년 37,510명에서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10여년간의 통계를 보면 매년 15,000-11,000명 수준이 유지되어 왔으나 2003년도에는 9,509명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하였다. 이는 캐나다, 뉴질랜드가 영어능력 요건을 강화하여 이주자가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민자는 소폭(33명)증가하였다.

2003년 해외이주자는 캐나다가 4,613명(48.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4,200명(44.2%), 뉴질랜드 435명(4.6%), 오스트레일리아 256명(2.7%), 기타 5명 순으로 나타났다.

형태별 해외이주자 수는 취업이주 4,364명(45.9%), 연고이주 2,529명(26.6%), 투자(사업)이주 1,496명(15.7%), 국제결혼 1,120명(11.8%) 등의 순이었다. 특기할 점은 1990년대 이후 연고이주가 줄어든 반면, 취업이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 및 사업이주는 1990년의 4,622명(20%)에서 2003년에는 5,860명(61.6%)으로 증가세에 있다.

4. 영주귀국(역이주) 현황

해외이주를 희망하는 국민들 못지않게 이민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의 영주귀국 및 해외이주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영주귀국자 및 해외이주 포기자 수는 1980년 1,049명(이주신고자

대비 2.8%), 1986년 2,584명(7%)에서 1989년 6,685명(25%), 1992년 8,892명(50%)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오다가, 1999년에는 4,799명, 2000년에는 4,397명, 2001년에는 3,705명으로 감소하였고, 2002년에는 4,257명으로 다소 증가하다가, 2003년에는 3,676명으로 다시 감소(전년대비 -13.6%)하였다. 이러한 영주귀국과 해외이주 포기는 국내의 경기 흐름에 주로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라 영주귀국자가 증가하다가 1997년의 경제위기를 분수령으로 차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영주귀국의 사유로는 현지생활 부적응, 국내 취업, 이혼, 노령, 신병치료, 국내취학 등으로 나타나 있다. 2003년 내역을 보면 영주귀국자가 2,962명이며, 해외이주 신고 후 이민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민을 포기한 사람은 714명이었다.

국가별로 분류하면, 미국으로부터의 영주귀국자가 1,927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524명(14.3%), 중남미 지역 464명(12.6%), 뉴질랜드 121명(3.3%), 호주 50명(1.4%), 기타 590명(1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2절 재외동포 보호 및 지원

1.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 시행

우리의 재외동포는 2003년도 현재 약 630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재외동포의 규모는 세계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그 숫자나 인구대비 비율에 있어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한다. 또한 이들 재외동포의 대부분은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 · CIS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대비 높은 재외동포의 비율과 거주지역의 분포는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예를 찾기 쉽지 않다.

재외동포사회는 규모의 확대와 함께 재외동포사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으며, 이들의 거주국내 주류사회 진출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재외동포사회의 확대 및 변화와 재외동포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심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있다.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를 모두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그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에서의 활동에 많은 불편을 겪어 온 재외동포들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여 이를 내국민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 재외동포법은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주한 동포로 제한함으로써 주로 재미동포와 재일동포에게만 법 혜택이 부여되었고, 재중동포 및 재러시아 · CIS 동포는 제외됨에 따라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결국, 2001년 헌법재판소는 동포간 평등권 위반으로 동 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정부는 동 법의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해외이주 시점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간 차별규정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중국 및 러시아 · CIS 동포들도 동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고, 재외동포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다만, 정부는 외국국적 동포들이 단순노무 종사 등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불법체류 목적이 아님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F-4)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는 2004년 3월 재외동포법(제2조) 자체를 개정하여 재외동포 범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이전에 이주한 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화하였다.)

정부는 2003년 8월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동 고용허가제로 인해 단순 기능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외국국적 우리 동포에게도 고용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과 서비스업 등 국내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는 특히 우리 동포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 불법적으로 국내 취업해 있던 많은 중국 동포들이 합법적인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그동안 국내 단순노무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된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동 법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많은 중국동포들이 동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재외동포재단 활동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사회의 역량강화 및 자조능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 630만 재외동포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동포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중국 및 CIS지역 재외동포를 위하여 IT직업연수를 실시하고, 조선족학교 등 민족학교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PC 등 정보화 교육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동포사회의 자조능력 함양 및 민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둘째,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함양을 적극 도모하여 모국과의 지속적인 연계성을 이어가고자 국외입양동포 초청연수, 차세대 지도자 워크숍 및 재외동포 청소년 · 대학생 모국연수 등 동포 2,3세 대상 초청 연수를 확대하였다.

셋째, 교류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사회의 여론 주도층이나 동포사회 지도자 등을 국내에 초청하여 이들을 격려함으로써 향후 동포사회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2003년 8월 「세계한인회장 대회」를 개최하여 모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고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 국내 · 외 동포간 상호교류촉진을 결의하는 등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동반자적 발전관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세계한민족문화제전」을 개최하여 재외동포예술인의 예술역량 및 민족의

식을 함양하여 동포사회문화, 예술증진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문화민족으로서 거주국내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유도하였다.

넷째, 재외동포 경제인간 협력 촉진 및 모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세계한상대회」를 활성화하고 재외동포의 민족자산화 및 모국기여 활동 강화를 위하여 〈한상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재외동포의 경제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였다.

상기 사업외에도, 재외동포 포털사이트인 korean.net 구축 · 운영으로 On-line상의 재외동포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모국과 재외동포, 재외동포 상호간의 사이버 가교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재외동포사이버한국어강좌(Teenkorean.net) 서비스 등을 통한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유지 · 강화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재외동포들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Korean.net상에서 재외동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재외동포관련 민원처리과정에서의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향후 재외동포재단은 분야별 재외동포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공동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한인 해외이주 기념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모국과 재외동포의 동반자적 발전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 3 절 재외국민 보호활동

1.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활동

가. 개 요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자수는 해마다 대폭적으로 늘고 있으며, 2003년 한 해에만 해외 여행자수는 약 700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 · 사고의 수가 증가하고 국민들의 영사민원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건 · 사고를 예방하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나. 평상시 재외국민 보호활동

외교통상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전재외공관의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 ·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주재국 치안 및 사법당국과 상시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 · 강화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영사과' 및 '재외국민보호센터'에서는 해외에서 사건 ·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해당 재외공관 및 국내 연고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국내 가족들의 현지 방문 및 사건 수습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사건 · 사고를 가능한 한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한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해외여행정보'란에서는 해외에서의 신변안전 유의사항, 출입국시 필요한 정보 및 현지 정세를 수시로 갱신하여 공지함으로써 해외출국자들이 출국전에 신변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위험지역 방문 전에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 비상시 재외국민 보호활동

2003년에는 이라크전 발발을 전후한 중동지역의 정세 악화, 동남아 등지에서의 테러 사태 등 해외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테러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SARS 및 조류 독감의 확산에 따라 국제전염병으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할 필요성도 더욱 부각되었다.

외교통상부는 이라크에 전운이 고조됨에 따라 이라크는 물론, 인접국가인 이스라엘, 쿠웨이트, 요르단 등 전쟁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재외국민들의 비상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우리 현지 대사관은 현지 체류국민들의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고 단계별 철수 계획에 따라 현지 체류 국민 대다수가 안전지대로 대피하도록 안내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대사관이 숙소 예약, 사증발급 협조, 교통편 제공 등의 지원을 함에 따라 이라크, 쿠웨이트, 이

스라엘 등 위험지역 재외국민의 80%가량이 철수 또는 대피하였고 이로써 이라크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전쟁 종료 후에도 동 지역내에 치안이 확보되기 전까지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복귀하는 재외국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한편 SARS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영사국내 SARS 대책반을 구성하여 SARS 확산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전염병으로부터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SARS 발발지역 및 확산위험지역 관할 공관을 통해 해당 지역에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수시로 SARS 발병 현황 등을 국내 관계기관에 전파함으로써 국내 방역 기관 업무에 협력하였다.

2. 영사업무 체제 개선

가. 개 요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급증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해외 체류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라 폭증하는 영사서비스 수요에 부응코자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 보호업무의 종합체제를 재정비하고 강화하였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재외국민보호업무 종합체제의 일환으로 재외공관이 제공하는 영사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영사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영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나. 재외국민 보호 종합체제 개선

외교통상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2003년 도중 재외국민보호센터 및 본부 영사과에 영사업무 유경험자를 배치하였으며, 공관 건의 등을 토대로 4개의 사건 · 사고 다발 공관에 경찰주재관 파견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 ·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긴급 대처방법이나 공관의 영사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사례조사와 외교통상부내의 법적 · 실무적 검토를 거쳐 해외에서 사건 · 사고 발생시 우리 공관에서 지원가능한 영사서비스의 내용을 확정하여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길라잡이' 팜플렛을 2003년 7월 발간 · 배포하였다. 또한 재외국민피해 사건 · 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중국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수감자 데이터베이스를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 시행함으로써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 사고 및 수감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였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사 인력의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서 제기되었다. 재외국민이 630만명에 이르고, 해외 여행자가 연 700만명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현재 규모의 외교통상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영사 업무 인력으로는 적절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유관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인력 등 영사 업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다. 영사민원서비스 개선

외교통상부는 본부 및 재외공관의 영사민원서비스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영사민원서비스 개선책 강구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여 영사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작성하였다. 작업반은 영사민원 개선 방안을 예산 및 인력 추가 소요 여부를 기준으로 즉시 · 단기 · 중장기 시행방안으로 구분하여 우선 즉시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본부 및 재외공관의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전 공관이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영사민원서비스 헌장을 작성 · 배포하였다. 또한 주요 공관의 법률고문제도를 도입하고 현지 법률안내서 발간 추진 등을 통해 현지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재외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상의 사이버민원실 및 재외국민보호센터란을 적극 활용하여 사건 · 사고의 접수 및 회신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한편, 홈페이지의 해외여행정보란을 강화하여 출국하는 국민들이 출국 전 사전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라. 주요국과의 영사업무협력 체제 강화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와 영사 업무 관계가 긴밀한 주요 국가들과 정기적으로 양자 영사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제7차 한 · 중 영사국장회의(4월), 제7차 한 · 일 영사국장회의(11월)가 개최되었다. 또한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과 영사국장회의를 개최(11월)하였으며, 과테말라 이민국 출입국관리 차장이 방한(10월)하여 한 · 과테말라간 영사업무를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주상하이총영사관은 중국 절강성 공안국과 핫라인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중국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납치 등 강력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양자간 영사업무 협력관계의 강화를 위해 각종 영사관련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들의 출입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40여개 국가의 국민에 대해 지정에 의한 무사증 국내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국가들과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다.[13)]

13)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현재 62개 국가와 일반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 미국, 중국, 프랑스, 호주 등 17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조약, 미국, 중국, 일본 등 21개 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다.

제 4 절 여권 업무

1. 여권발급 현황

2003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국민들에게 발급된 여권은 2,359,444건으로서 2002년도(2,978,202건)에 비해 약 20% 감소되었다.

1997년 IMF사태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던 여권발급건수는 2000년도를 분기점으로 매년 약 20%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2003년도에 갑자기 발생한 SARS 및 이라크전 발발 여파 등으로 인해 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여권발급량이 다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별로는 7월이 26만건으로서 연중 최다 발급량을 기록하였으며, SARS 발생으로 해외여행객이 대폭 줄어든 5월에는 11만건이 발급되어 연중 최저치를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일반여권 발급량 217만건중 남자 112만건, 여자 105만건으로서 남녀간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아울러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만건에 달해 전체발급량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2. 민원인 편의 증진

현재 전국에는 서울시 6개 구청을 비롯하여 각 시 · 도 등에 총 23개

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점차 늘어나는 여권수요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시 4개 구청(구로, 마포, 성동, 송파)이 여권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또한, 여권유효기간 연장 신청기한을 종전 만료기간 전후 6개월에서 1년 전후로 늘렸으며, 여권신청서식의 인터넷 내려받기 및 민원인의 휴대폰을 통한 여권발급상황 안내 등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였다.

3. 신 여권발급 사업 추진

우리나라는 현재 사진을 여권에 부착하는 사진부착식 여권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최근 여권의 위 · 변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9.11 테러 사태이후 미국 등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여권에 얼굴윤곽이나 지문 등을 내장한 생체여권의 발급을 서두르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사진전사식 여권발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 여권발급 사업을 추진중이다.

사진전사식 여권발급 시스템은 사진을 여권에 부착하지 않고 제출된 사진의 이미지를 여권에 전사하는 방식으로서 여권의 품위와 내구성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전망되며, 2004년 11월 시범실시를 거쳐 2005년도에는 국내 27개 시 · 도청 여권발급기관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시스템 도입과 함께 현재 5년인 여권유효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동반자 병기제도는 폐지, 1인 1여권 소지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시행될 생체여권 발급에 대비한 기본 환경도 구축하

게 되어 우리나라 여권이 국제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